사단법인 로제타 홀 기념관

(Rosetta Hall Museum Corporation)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구성원간 수익배분을 금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사단법인 로제타 홀 기념관"** 이라 칭하며, 영문으로 Rosetta Hall Museum Corporation(이하 "본회" 또는 "로제타 홀 기념관" 이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한국근대의료역사 및 기독교 유산을 보존 · 계승하는 문화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 18, 1 층(율목동), 로제타 홀 기념관 안에 둔다.

제 4 조 (사업)

로제타 홀 기념관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로제타 홀 기념관(박물관) 사업 및 관련 교육사업
2.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수익사업)

본회는 4 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제 4 조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회원은 본회의 사업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 정기적인 회비, 재정 및 물질적 지원을 후원하는 자를 칭한다.

2) 임원은 본회의 사업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본회가 정한 정기적인 회비, 재정 및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제공되는 보고서와 정보를 제공받는다.

제 9 조 (회원의 탈퇴)

회원과 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본회의 재산은 탈퇴로 인해 회원과 임원에게 환급되지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2)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 인
2. 상임이사 1 인
3. 당연직 이사 (중부연회 감독, 감리사 협의회 임원) 각 1 인
3. 이사 15 인 이하로 한다.
4. 감사 2 인

제 11 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으로 선출된 이는 본회가 정한 정기적인 회비와 기부금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임기 만료 시에는 1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해임)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장의 임기는 2 년 단임으로 한다.

2) 이사의 임기는 2 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3)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임기가 만료되며, 후임자가 계승한다.

4) 임원이 결원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3.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회의 업무,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사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④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 요구한다.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한다.

제 15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 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 16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17 조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 년도 개시 1 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 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 14 조 제 4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 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19 조 (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 1 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0 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2 조 (회의록)

1. 이사회의 정기 및 임시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 임원 전원이 확인하며 서명.날인한다.

2. 회의록은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며 임원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5 장 총 회

제 23 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으로 구성하되,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해 대의원회를 둔다.

제 23 조의 2 (대위원회)

1. 대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2. 대위원회의 내규는 총회에서 정한다.
3. 대위원회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4. 대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위원회의 의결은 총회 의결로 간주한다.

제 24 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 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 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 15 조 제 4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 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 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 혹은 로제타 홀 기념관 관장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6 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출석 및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 28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 장 재 산 과 회 계

제 29 조 (재산의 구분)

본회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 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0 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 (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제 40 조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31 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2 조 (회계 원칙)

①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하여 정부가 정하는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연간 기부금 모금 내역과 활용 실적은 매년 3 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33 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정부의 회계 년도에 따른다.

제 34 조 (사업계획과 예산)

① 본회는 사업연도의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 . 지출 예산서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내용 및 소요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로제타 홀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제 35 조 (회계감사와 결산 등)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제 1 항의 결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결산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3. 감사의견서

제 36 조 (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 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제 37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 회 실시한다.

제 38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 39 조 (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 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상임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40 조 (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법인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 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잔여 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43 조 (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 9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 44 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5 조 (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1 년 12 월 15 일

발기인 대표 강경신 (인)

발기인 김병국 (인)

발기인 노이호 (인)

발기인 최영석 (인)

발기인 황광호 (인)

발기인 황규호 (인)

발기인 손웅석 (인)

발기인 이선목 (인)